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

본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이하 "약정"이라 함)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당행"이라 함)이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귀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요청 받은 포페이팅 거래에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한다. 개별 포페이팅거래의 신용장 내역은 본 약정의 첨부 1의 포페이팅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함)에 기술되는 바와 같다. 의뢰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본 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의뢰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제 1조 (필요서류 및 절차)

- (1) 본 약정의 목적은 귀사가 관련 신용장에 따라 선적 후 당행에게 포페이팅을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하고자 함이다. 의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행이 검토할 수 있는 원본신용장 및 조건변경서 기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모든 관련 서류 및 당행이 지정하는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2) 당행은 첨부 양식에 의한 의뢰서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귀사의 포페이팅 거래 요청에 대하여 그 동의 여부, 해당 할인금리 및 수수료를 귀사에 통보한다. 당행이 의뢰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 귀사의 요청에 대하여 이와 같이 승낙의 의사를 통보하기 전에는 당행은 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당행이 의뢰서에 명시된 귀사의 요청을 이와 같이 승낙한 때에 귀사와 당행이 해당 의뢰서와 본 약정서에 규정된 포페이팅 거래 조건들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조 (매수대금 및 지급)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행은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인수어음을 수령하거나 인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귀사에, LIBOR 기타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당행이 정하여 제1조 제2항과 같이 통지한 이율로 어음 또는 송장(invoice)의 액면 금액을 할인한 금액(이하 "매수대금"이라 함)을 비소구조건으로 지급한다.

제 3조 (LIBOR)

이 약정에서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로이터 LIBO 페이지에 고시되어 모든 참조은행 (reference bank)이 인용하는 해당 기간의 금리를 의미한다. 해당 거래 통화에 대한 금리가 LIBO에 반영되지 않고 달리 특정된 바가 없는 경우, 당행은 당행의 자금 조달 비용 또는 제3자가 해당 통화로 해당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LIBOR 대신 기본 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금리가 '0' 보다 적은 경우 LIBOR 가 '0'인 것으로 간주한다. 귀사가 본 조항에 따라 할인금리를 결정하여 산정된 매수대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사는 본 약정에 따라 할인을 위해 당행에 의뢰서를 제출한 해당 포페이팅 거래 신청을, 당행의 대금지급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제 4조 (세금, 관세, 수수료 등)

- (1) 만기일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떠한 성격의 세금이나 관세 등이 공제되지 않고 어음의 액면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 (2) 신용장의 포페이팅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부과하는 세금, 부과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귀사에서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 (3) 인수수수료, 대체료, 하자수수료, 결제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당행,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청구하는 모든 신용장 관련 수수료와 상환수수료는 귀사의 부담으로 하며, 당행이 귀사에 지급하는 매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 5조 (인수 전 소구조건부 매입)

- (1)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어음 인수 또는 인수통지 전이라도 귀사가 요청 할 경우 당행은 재량에 따라 귀사에 본 약정에 의하여 임시 자금공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금공여 이후에 당행이 지시에 따라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서류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들 은행으로부터 어음인수 또는 인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행은 귀사에 대하여 완전한 소구권을 행사하여 본항에 의한 자금공여를 중단하고 귀사에 해당 자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귀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 (2) 전항에 의한 임시적 자금공여는 당행이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인수어음을 수령하거나 인수통지를 받은 후에는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비소구조건부 매입으로 변경된다.

제 6조 (비소구조건부 금융의 의미)

제1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고 당행이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인수어음을 수령하거나 인수통지를 받은 후에는 당행(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은 채무자 또는 어음 의무자의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이 국가위험, 신용위험, 상업위험 또는 송금위험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귀사, 그 전 소지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를 위한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제 7조 (비소구조건부 금융의 예외)

본 약정에 의한 금융이 비소구조건부임에도 불구하고, 제8조(진술과 보장), 제9조(고객확인 및 법규이행 활동)에 규정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행은 귀사에 대한 자금공여를 취소하고 그 공여된 자금을 즉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 8조 (진술과 보장)

귀사는 아래의 내용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1) 귀사가 제출한 신용장은 유효하고 모든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2) 귀사가 본 약정 하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신용장조건과 완전히 일치한다.
- (3) 귀사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관련 신용장 조건의 수정, 변경 요청을 받는 경우 당행의 사전승낙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 (4) 본 약정에 따라 당행에 의해 포페이팅되는 신용장과 관련하여 귀사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품질, 목적, 명세 등)에 맞게 매도인 또는 신용장 수익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 한다.

제 9조 (고객확인 및 법규이행 활동)

당행은 본 약정에 의한 개별 포페이팅에 관련된 신용장의 기초 거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질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기초 거래에 대하여 본 약정에 의한 금융 공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 공여를 중단할 수 있다.

당행이 속한 HSBC 그룹은 유엔, 유럽연합, 영국, 미국 및 HSBC 그룹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관할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 제재 조치, 관련 당국 및 기관의 국제 지침 또는 절차("준수대상법규")의 준수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법규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행은 법규이행조치에 의하여 본 약정에 따른 자금의 공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귀사에 대한 자금 공여가 준법대상법규에 위반되는 것임을 당행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귀사에 해당 자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귀사는 본 약정에 의한 포페이팅과 관련한 기초 거래를 위해 해당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선적항에서 양하항까지 운항하는 중에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제재(sanction)를 받는 국가의 항구에 정박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한다.

제 10조 (서류의 제공과 추가서류의 요청)

- (1) 당행은 본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와 관련된 서류 사본을 그룹 내계열 회사에 또는 거래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2) 당행의 판단으로 해당 신용장 상 물품의 수입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행은 언제라도 해당 물품이 수입국으로 적절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귀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 (적용기간 및 해지)

본 약정의 적용 만료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30 영업일이 경과한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발생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조 (개별성)

본 약정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등의 사정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조항만이 무효이고 다른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조 (언어)

본 약정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만약 국문본과 영문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14조 (준거법과 관할)

본 약정과 의뢰서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는 대한민국법령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해석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에 따른다.

제 15조 (적용의 우선순위)

- (1) 귀사와 당행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개별 합의사항을 본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본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체결된 수출거래약정에 의하고, 이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한다.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같이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다. 이에 더하여 아래 기재의 회사는 본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 외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체결일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인)

고객명 : (서명 또는 날인)

인감/서명 대 조	
--------------	--

포페이팅 의뢰서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중

당사와 귀행 사이에 체결된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체결일자 :)에 따라, 당사는 비소 구조건부 금융에 의한 포페이팅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 기재의 신용장과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1a. 신용장 개설은행/신용장 번호	
1b. 신용장 확인은행 (해당될 경우)	
2. 신용장 금액	
3. 매입금액	
4. 연지급 기간	
5. 신용장 개설의뢰인	

당사는 귀행이 본 의뢰서 및 위 신용장과 기타 관련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귀행의 포페이팅 거래 동의 여부, 해당 할인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당사는 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인수여음을 수령하거나 인수통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포페이팅이 유효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행이 인수여음의 수령 또는 인수통지를 받기 전에 당사가 귀행에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그 승낙 여부는 귀행의 재량에 의합니다. 귀행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해당 서류를 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들 은행으로부터 어음인수 또는 인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귀행이 당사에 소구권을 보유하며, 귀행이 인수여음의 수령 및 인수통지를 받는 즉시 귀행의 소구권은 소멸합니다.

당사는 위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매수인과 당사의 계약 조건에 따른 물품, 목적, 명세 등에 맞게 상품 선적을 이행하였으며 매도인 또는 신용자 수의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위 신용장과 관련하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의해 인수된(인수되는) 어음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귀행에 무조건, 취소불능으로 양도합니다. 위 신용장이 어음 없는 연지급 신용장인 경우 당사는 위 신용장에 따라 당사에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본 의뢰서를 통하여 귀행에 양도합니다.

날짜 :

(권한자 서명)